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258

발의연월일: 2021. 2. 24.

발 의 자:오영환·서영석·설 훈

박재호 · 서영교 · 장철민

박 정・임오경・이병훈

임호선 · 김민철 의원

(1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소비자단체와 한국 소비자원으로 하여금 물품등의 규격·품질·안전성·환경성에 관한 시험· 검사 및 가격 등을 포함한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관한 조사·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자신이 제조·수입·판매·제공한 물품등이 소비자단체와 한국소비자원의 조사·분석 대상이 된 사실을 알지 못 한 상태에서 해당 물품등의 조사·분석 결과 공표가 결정된 후에비로소 그 사실을 알고 소명을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었음.

이에 소비자단체와 한국소비자원이 물품등의 조사·분석을 하려는 경 우에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해당 물품등이 조사 대상이 되었음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여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방어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2항 및 제35조제2항 신설).

법률 제 호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소비자단체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조사·분석 등을 실시하 려는 경우 해당 물품등의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물품등이 조사 대상이 되었음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제3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한국소비자원이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조사·분석 등을 실시 하려는 경우 해당 물품등의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물품등이 조 사 대상이 되었음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소비자단체의 업무 등) ①	제28조(소비자단체의 업무 등)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② 소비자단체는 제1항제2호의
	<u>규정에 따른 조사·분석 등을</u>
	실시하려는 경우 해당 물품등
	의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물품등이 조사 대상이 되었음
	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u>②</u> ~ <u>⑤</u> (생 략)	<u>③</u> ~ <u>⑥</u> (현행 제2항부터 제5
	항까지와 같음)
제35조(업무) ① (생 략)	제35조(업무) ①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② 한국소비자원이 제1항제2호
	의 규정에 따른 조사·분석 등
	을 실시하려는 경우 해당 물품
	등의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에 물품등이 조사 대상이 되었
	음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u>②</u> ~ <u>⑤</u> (생 략)	<u>③</u> ~ <u>⑥</u> (현행 제2항부터 제5
	항까지와 같음)